

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594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8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‘협력체계 구축’ 조문(안 제4조) 및 ‘공공시설의 이용’ 조문(안 제5조)의 일부 자구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4조(협력체계 구축) 중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하고, 안 제5조(공공시설의 이용) 중 “등에”를 “에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중 “시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안 제5조 중 “등에”를 “에”로 한다.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지역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<u>시</u> 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.	제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지역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<u>서울특별시</u> 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.
제5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<u>등에</u>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	제5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 <u>에</u>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(이하 “지역회의”라 한다)와 협력하고 행·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재정 지원)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
2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
3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
4.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
5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
6. 그 밖에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.

제5조(공공시설의 이용)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

협조할 수 있다.

제6조(포상)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